

# 2026년 충남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인력풀 상시 모집 공고

##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모집분야	모집인원	직무 내용
소속 시설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자체)사업	돌봄직	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지원 업무(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 보조 등)</li> <li>• 이동지원 업무(야외문화 활동보조, 외출 동행 등)</li> <li>• 기타 시설에서 요청하는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 지원 등</li> </ul>
		조리직	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의 조리 업무</li> </ul>

※ 모집인원은 결원 발생에 따라 상이함

## 2 근무 조건

모집분야	근무조건	
돌봄직 조리직 (인력풀)	고용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시간 근로자(시급제)</li> <li>※ 인력풀 등록 후 파견수요 발생 시 인력 채용</li> <li>※ 인력풀 모집 및 구축 후 파견 수요 발생 시 실제 고용이 체결됨</li> </ul>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견일~종료일(개인별 상이) / 계약기간 만료 시 노동계약 종료</li> </ul>
	근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상이</li> <li>※ 단,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li> <li>※ 파견 사회복지시설 상황에 따라 주말, 공휴일, 야간 근무 가능</li> <li>※ 최소 월 10일 이상 근무토록 배정 예정이나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li> </ul>
	인력풀 등재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풀 등재일 ~ 2026. 12. 31.(협약에 따른 사업 대행기간)</li> </ul>
	근 무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력풀 등재자 거주 지역 우선 배정)</li> <li>※ 제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li> </ul>
	2026년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당 14,420원 (기본 시급+주휴수당) (고용·산재보험 필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조건 부합 시 가입)</li> <li>※ 임금 산출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시급) 2026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액 : 12,020원</li> <li>- (주휴수당) 기본시급 12,020원 × 0.2 : 2,400원</li> </ul> </li> <li>※ 「2026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기본시급으로 하는 포괄 시급제</li> <li>• 교통비 1일 5,000원</li> </ul>

### 3 응시자격

#### 가. 공통자격

- 연 령: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 성별·거주지: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충남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채용 분야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1>결격 사유

#### 나.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기준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돌봄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中 1개 이상 해당자</li> <li>※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li> <li>※ 채용 우선순위                (1순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2순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및 보육사 자격증 소지자</li> </ul>
조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체급식 양성교육 이수자, 조리업무 경력자 中 1개 이상 해당자</li> <li>※ 채용 우선순위                (1순위)자격증 소지자로서 단체급식 경력자                (2순위)자격증 소지자, 단체급식 양성교육 이수자                (3순위)조리업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ul>

#### 다. 우대사항(가점)

구 분	대 상 자	점 수
장 애 인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5점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li> <li>•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li> <li>•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li> <li>•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li> <li>•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li> <li>•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li> </ul>	심사점수(만점)의 5~10%  <b>*중복 불가</b>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 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가산점은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 면접 전형에 한하여 적용

## 4 제출서류

제출서류		인정 기준	제출시기
공통 (필수)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식교부: 충남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a href="http://cn.pass.or.kr">http://cn.pass.or.kr</a>) / 채용정보</li> </ul>	서류전형
공통 (필수)	자격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증(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격증)</li> <li>※서류 제출일 기준 최종합격자 발표가 완료된 자격만 인정</li> <li>※졸업예정자일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등 확인가능한 자료로 증빙</li> </ul>	면접전형
해당자	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분야 경력증명서</li> </ul>	
	장애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li> </ul>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보훈처 및 정부24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li> <li>※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li> </ul>	

※ 면접전형 당일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증빙할 원본 확인(원본과 사본 동시 지참하여 사본 제출 가능) 미제출시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인정되지 않음.

## 5 전형 일정 및 기준

### 가. 채용전형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채용공고	2026.2.1. ~ 2026.11.30.	본원 홈페이지 등
원서접수	2026.2.1. ~ 2026.11.30. 18:00까지	<a href="mailto:skdud@cn.pass.or.kr">skdud@cn.pass.or.kr</a> 메일접수만 가능 (방문·우편 접수 불가)
1차 서류전형	상시	적격여부 심사
1차 서류전형 발표	상시	본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2차 면접전형	상시	1배수 이내 선발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상시	본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임용후보자 등록	상시	서류 제출 및 결격사유 확인
인력풀 등록		인력풀 등록 후 파견

※ 본 채용은 상시 모집으로 운영인원이 충족 될 때까지 상시 모집으로 추진

## 나. 채용전형 일정

### ① 채용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2. 1. ~ 2026. 11. 30.
- 접수기간: 2026. 2. 1. ~ 2026. 11. 30.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 [skdud@cn.pass.or.kr](mailto:skdud@cn.pass.or.kr) 접수만 가능(방문 · 우편 접수 불가)

### ② 1차 서류전형

- 심 사 일: 상시
- 서류심사: 내부위원 2명
- 심사내용: 채용 응시자격 기준 등 적격여부 심사
- 서류적격(합격)기준

구 분	심 사 기 준
자 격	· 공고일 전일 기준 자격 등 응시자격 충족한 자
기타사항	· 자기소개서에 비속어 사용하거나 특정 문자만을 반복 기재, 빈란의 경우 부적격

### ③ 2차 면접 전형

- 일 시: 상시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장소: 충남사회서비스원 예정
- 면접방법: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 면접 (구조화 면접으로 경험 및 상황면접)
- 심사위원: 2명(외부위원 2분의 1이상)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계	품행,성실성 및 직업윤리	의사소통력 및 대인관계성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공 및 실무경력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블라인드 채용 준수 ※면접 당일 면접관 사전교육 30분 시행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정보제공 금지
  -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 ※ 면접전형 당일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증빙할 원본 확인(원본과 사본 동시 지참하여 사본 제출 가능). 미제출시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인정되지 않음.

- 합격기준 : 면접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점을 더하여 평균한 점수가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시
    - ① 취업지원대상 ② 장애인 ③ 채용우선 순위 순으로 선발
- 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 및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후 순위 합격자에 대해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④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상시
- 등록서류
  - 필수서류: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범죄경력조회확인서(소정 양식), 채용신체검사서(전염성질환 및 마약검사·정신질환 유무 등에 대한 검사 포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해당자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 실확인서, 병역증명서
- 등 록 일: 상시
- 등록서류 검토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사실확인서)
  -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내용 사실 여부 확인
  - 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한 건강상태 적합 여부 확인 등
- 합격 취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취소
  -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함은 물론 합격 및 채용을 입사 후에도 취소

#### ⑤ 최종 합격자 안내

- 최종합격자 안내: 상시 ※개인별 안내

##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는 전자우편(skdued@cn.pass.or.kr)를 통해서 진행하며 응시자는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원서 수정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성별,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일절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단,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로 면접대상자 신원확인 과정에 따라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음
- 본 계획 및 일정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 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 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응시원서작성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구비서류 미제출 등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임용된 경우에도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 단계별 합격자, 제출서류 등은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누락이나 기재 착오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인원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채용 분야별로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채용은 상시 모집으로 인력 모집 완료될 때까지 상시 모집으로 추진합니다.
- 면접 당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어 면접시간 10분전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 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 최종 합격자 확정된 이후 30일이 경과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에 따라 파기됩니다.
  - 청구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skdued@cn.pass.or.kr)로 제출(이메일 제출시 우선으로 연락 바람)
  - 반환방법: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수령
-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skdued@cn.pass.or.kr)로 송부(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우선으로 연락 바람), 이의신청 내용 확인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문의: 충남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 041-330-2462)

## <별첨 1> 결격사유

### [공통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4.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2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22.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 중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취업에 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못한 자

○ 채용 분야별 결격사유

채용분야		결격사유
사회 복지 대체 인력 지원 사업	돌봄직 조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ul> </li> <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성범죄경력자는 대체인력 참여 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li> <li>○ 기타 대체인력 참여 제한                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li> </ul>